

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6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9. 6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9. 6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9.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8조)
-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11조)
-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12조)
-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
(안 제16조 및 안 제1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94. 12. 31 조례 제140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까지 개정 없이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저 함은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합하고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9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